

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대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심의
2. 대학입학 주요과정의 감시활동
3. 편입학 시험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입학부정 방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활동기간) 위원회의 주된 활동기간은 대학입학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대학입학 종료 후 일정기간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3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